

( 기 관 명 )

문서번호

시 행 일

받 음

제 목 토지 용도 ·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매립시설 설치자 |  |
| 매립시설 소재지 |  |
| 이용용도     |  |
| 이용기간     |  |

시 · 도지사  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|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  |  |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   |  |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       |  |
| 협조자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|  |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우 주소            |  | / 홈페이지 주소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전화번호( )         |  | 팩스번호( )          |  |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 |  |